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-496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4월 6일

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고객주차제도 신설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변경을 위해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고객주차제 시행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표 개정 (안 별표2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(참조 : 교통지도과장, ☎ 450-7962, FAX : 3425-1728, E-mail : dispersion03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·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과 그 대표자)